##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12.27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7항에 따라 강사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구분)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만을 담당하는 강의전담강사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3조 (자격) 관할청의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다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- **제4조 (결격사유)**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  -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.
- 제5조 (임용일)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- **제6조 (임용기간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 하되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  - 1. 6개월 미만의 병가・출산휴가・휴직・파견・징계
    - 2. 6개월 이하 연구년
    - 3.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 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    - 4.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)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제7조 (당연퇴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  - 1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  - 2. 재임용이 거부된 자
  - 3. 임용기간 중 만 70세에 달하는 자(이 경우 만 70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)
- 제8조 (교원인사위원회)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에서는 강사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.
- 제9조 (인사심의회) ① 각 학부(과)에서는 강사의 신규채용·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단, 인문자연학부의 경우 계열(인문, 자연과학)을 분류하여 구성하며 1/3이상을 타학부(과)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의회는 학부(과)장이 주관하여 구성한다.
- 제10조 (신규채용 절차) ① 강사를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한다.

- ② 강사의 신규 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통합 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
  - 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일치 여부
  - 2. 전공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 심사
  - 3. 면접심사 :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능력, 교육자적 자질 및 인성 등 심사
- ③ 제2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11조 (계약제 임용 등) ① 강사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, 임금 (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),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, 면직사유,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.
  - ② 강사에게는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·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,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 또는 신규채용절차에 따른다.
  - ③ 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, 계절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필요한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의 이유로 교과목이 미개설됨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도 제1항에 정한 임용기간에 포함된다.
  - ④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 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.
  -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재임용할지 결정하고,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1월 전 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. 이 경우 해당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한다.
  - ⑦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해당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날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.
  - ⑧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.1. 「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」에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2.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
  - ⑨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 다

제12조 (면직사유 등)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
제정일: 019. 8. 26 - 2 - 개정일: 2019.12.27

- 1.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- 2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- 3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- 4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때
- 5.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·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.
  - 1. 교육과정 개편
    - 가. 해당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
    - 나.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
  - 2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  - 3. 학부(과)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
    - 가. 소속 학부(과)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
    - 나. 담당하는 교과과정의 폐지
    - 다.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교원을 채용한 때
    - 라.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- 제13조 (강의시간) ① 강사가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의 승인하에 9시간까지 강의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7>
  - 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  - 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.
- 제14조 (근로조건 및 복무 등)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「교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정」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  - ④ 강사의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 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  - ⑤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학기 시작 2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월 전)까지 소속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
  - ⑥ 강사가 강의평가점수 저조 등 강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15조 (휴직)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

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- 1. 업무상 부상,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
- 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- 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- 4.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- 5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 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- 6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하는 경우
- ② 강사가 임용기간 내 휴직을 신청하면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.
- 제16조 (징계) ① 강사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5인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한다.
  -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    - 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강사의 본 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  - 2.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,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
    - 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    - 4. 그밖에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  - ③ 총장은 강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  - ④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.
  - ⑤ 강사가 임용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17조 (급여 등) ① 강사에게는 담당교과목에 대해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담당강의를 계획·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·평가·환류 등 운영,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의 대가를 본교의 「강의료 지급규정」에 따라 환산하여 정한다.
  - ② 강사의 급여는 학기단위로 산정한 후, 학기 중 급여와 방학 중 급여로 구분 하여 지급하되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  - 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  - ④ 강사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⑤ 강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⑥ 강사의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 다.

제18조 (인사관리의 전자화)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

제19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.
- **2. (시행일)**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.